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일임형) 약관 신규조문대비표

개정 2022년 05월 16일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6 조(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) ① ~ ② (생략)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	제 6 조(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“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”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	의미의 명확화
제 13 조(수수료) ① ~ ② (생략)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,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. ④ ~ ⑨ (생략)	제 13 조(수수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<u>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</u>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,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. ④ ~ ⑨ (현행과 같음)	금융투자협회 약관 예시안 변경 내용 반영